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 977,2016초기1959 판결 모욕,위헌심판제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정977 모욕

2016초기1959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기사에 피해자 B에 관하여"사이코 같은 년!!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저런다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다 그 망할 놈의 정치 때문이야!! 우리가 왜 저런 년의 연설을 들어야 하나? 차라리 유명한 대학교수나 강사의 강의를 듣고 말지... 정치... 요즘은 무척 회의가 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고 싸움인지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들어. 다들 국민을위한다고 그러고 빨갱이가 어떻게 종북이 어쩌고 역사가 어떻고 그러는데 정녕 진실은 어디에 있나? 진짜무엇이 진실이야? 확실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는 어줍잖은 견문으로 진실인냥 포장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대, B!! 정작 알고 있는 게 뭐야? 뭘 제대로 알고 함부로 씨부리나? 정말 한심해. 너 같은 것들 때문에라도 정치에 환멸을 느끼려 그런다. 참 뻔뻔한 년이야!"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정치적 표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 1. 신청취지
- 이 사건 처벌조항인 형법 제311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적정성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 2. 판단
- 가.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명확성 및 적정성)
-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로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 '깔보고 욕되게 함'을 의미하고, 형법학계의 해석도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거동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모욕죄는 이와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을 사이버 게시 공간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다.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모욕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 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표현의 상대방이나 장소 등을 묻지 않고 모든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한이 비교적 낮으며,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욕죄에 따른 처벌은 표현의 자유로 얻는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서영